



: 2016-12-20

## 광 주 고 등 법 원

### 제 1 행 정 부

### 판 결

사 건 2015누7752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군수  
제 1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구합448 판결  
변 론 종 결 2016. 7. 21.  
판 결 선 고 2016. 9.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건물분 재산세 3,027,830원(가산금 338,750원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3,107,130원(가산금 325,910원 포함), 지방교육세 605,540원(가산금 67,73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2016-12-20

## 이 유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한

                 판사      김호석

                 판사      김성준